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07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추미애·송옥주·이수진

한정애 • 강선우 • 정성호

서미화 • 박홍배 • 박해철

이성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 같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 하더라도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해 압수수색 할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①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 없이는 押收 ----. 다만. 「형 또는 搜索할 수 없다. <단서 신 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설>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외 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第111條(公務上 秘密과 押收)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 하여는 本人 또는 그 當該 公務 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 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 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의 承諾 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9 <단서 신설> 0조까지의 내란에 관한 죄 또는 같은 법 제92조부터 제103조까 지의 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